

2025년 TV홈쇼핑 입점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

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용인시 중소기업의 원활한 온라인 진출 및 활성화를 위한 2025년 TV홈쇼핑 입점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국내 TV홈쇼핑 입점을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

2025년 3월 28일
용인시산업진흥원장

1 사업개요

- 사업명: 2025년 TV홈쇼핑 입점 지원사업
- 사업목적: 온라인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인 매출성과 증진
- 사업기간: 2025. 3. ~ 2025. 11.
- 지원규모: 2개사
- 추진방식: 국내 홈쇼핑사(우리홈쇼핑) 협업을 통해 지원
- 협업사: (주)우리홈쇼핑(롯데홈쇼핑)
- 지원내용: 국내 홈쇼핑 방송 판매 지원

| 채널 | 편성분량 | 내용 | 사업비 |
|-------|-------|--|---|
| 롯데홈쇼핑 | 30분/회 | ① 홈쇼핑 생방송 1회 지원 - 방송 판매수수료: 11%(택배비 등 포함) - 제품에 따라 방송시간 다양(새벽有) ② 재방송 2회 송출 지원 ③ 인서트영상(사전홍보영상) 제작지원 ④ 홈쇼핑사 자사물 노출·판매 지원 | 기업당 총사업비 1,500만원 - 1,200만원 지원(80%) - 300만원 자부담(20%) |

- 기업당 300만원의 자기 부담금 必(총사업비의 20%)
- 판매수수료, 원재료 및 상품 샘플비용 등 업체부담

2

신청자격

- 지원대상: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*

***중소기업 범위 (별첨1)**

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1항 및 동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기업

- 제외대상

- 홈쇼핑 방송 판매가 가능한 소비재를 취급하지 않는 기업
-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'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'에 금지 및 제한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
- 자체 브랜드가 없는 단순 도소매 상품, 해외 직수입, 해외ODM, 해외 라이선스, 대기업 및 중견기업 생산제품, 그밖에 유해상품(성인용품 등)
- 진흥원이나 유관기관,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(아이디어)으로 지원받은 경우(동일년도에 동시수혜 불가)
 -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,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
-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
- 부도 또는 휴·폐업 중인 기업
-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
- 타인의 창작물을 도용 및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
- 기타 관련규정, 중복성,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

3

신청기간 및 방법

□ 신청기간: 2025. 3. 28.(금) ~ 4. 15.(화) 18:00

※ 접속이 물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,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

□ 신청방법: 온라인 접수(용인기업지원시스템/ybs.ypa.or.kr)

○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지원사업 신청

※ 모든 신청기업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내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사전등록 필수

※ 접수처 외 메일, 오프라인 등의 제출은 불인정

○ 접수방법 : 용인기업지원시스템(ybs.ypa.or.kr)에서 회원가입 → 기업지원(상단 메뉴) → 지원사업공고 → 2025년 TV홈쇼핑 입점 지원 → 신청서 작성

○ 안내된 신청서류(첨부파일)를 작성하여 기타 제출서류와 함께 기업지원 시스템 내 업로드 제출(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)

※ 선정평가 전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 요청할 수 있음(서류 미비시 선정평가 제외)

□ 문의처

○ 기업육성팀 / 031-323-4690 / hyseok@ypa.or.kr

4

선정방법 및 평가기준

□ 선정방법: 3단계 평가 진행(진흥원-롯데홈쇼핑)

○ (1차) 진흥원 서류평가

- 기업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평가위원 5인 선정

- 평가위원의 5인의 서면평가 실시(평가위원별 최고·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)

-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 모두 적정 기업으로 선정

○ (2차) 롯데홈쇼핑 제품 품평회

- 방송 적합성, 차별성 성장성 등 홈쇼핑 전문 MD의 객관적 평가 진행

-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 중, 고득점 순으로 선정

- 미선정 기업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기업은 고득점 순으로 예비기업 선정

○ (3차) 롯데홈쇼핑 QA품질 평가 진행

- 2차 평가 선정기업 대상 방송전 롯데홈쇼핑 내 품질 심사 진행
- 품질 심사를 통해 방송 판매 적합 여부 판단후, 적합 판정시 방송 진행

품질심사란? 홈쇼핑 입점 판매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안정성 심사(서류/현장심사)

※ 홈쇼핑 품질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지연될 경우 방송 횟수 축소 또는 방송 판매 불가

□ 1차 평가기준표

※ 2~3차 평가는 협력사인 롯데홈쇼핑 내부 기준으로 평가 진행 예정

○ 선정평가

| 평가항목 | 세부평가항목 | 배 점 |
|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|
| 지원의 필요성 | - 추진 목적 및 배경, 추진 필요성 | 20점 |
| 기업(제품) 역량 | - 기술성 및 제품 우수성 - 기업 현황(인증, 특허, 유망중소기업 등) - 사업수행능력 -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| 20점 |
| 사업계획의 적정성 | -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, 사업계획의 구현 가능성 - 사업비 집행계획 적정성, 활용계획의 타당성 | 40점 |
| 기대효과 | - 예상 성과(매출, 고용, 인지도 등) - 파급효과(산업적, 경제적 효과 기여) | 20점 |
| 총 계 | | 100점 |

○ 가감점

| 구 분 | | 점수 | 비고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가점 | 진흥원 입주기업 | +1점 | |
| | 여성기업 | +1점 |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확인서 |
| | 용인시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| +1점 | 용인시 인증서 * 중복 적용하지 않음 |
| 감점 | 지원금액 총계 (전년도) | 5천만원 이상 | -4점 |
| | | 3천만원 이상 | -3점 |
| | | 3천만원 미만~2천만원 | -2점 |
| | | 2천만원 미만~1천만원 | -1점 |
| | 매출액 (전년도) | 300억원 이상 | -4점 |
| | | 300억원 미만~200억원 | -3점 |
| | | 200억원 미만~100억원 | -2점 |
| | | 100억원 미만~50억원 | -1점 |

※ 가감점은 선정평가(서면)시 1회에 한해 적용함

5

추진일정

□ 추진절차 및 일정

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신청서 접수 | 1차 선정평가 | 2차 ~ 3차 평가 (품질평가) | 실사/협약체결 | 방송진행 |
| 3. 28.(금) ~ 4. 15.(화) 18:00 | 1차 선정평가 (진흥원) | 2차 선정평가 및 품질평가 (롯데홈쇼핑) | - 현장실사 - 협약체결 | TV홈쇼핑 방송 진행 |
| 3월 | 4월 | 5월~6월 | 6월~7월 | 6월~11월 |

※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6

유의사항

- 서류 접수 후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
-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또는 현장방문을 진행할 수 있으며, 신청기업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
- 선정 후 실사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 및 제출 서류 내용을 대조하여 검증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지원비 환수
- **협약기간동안 사업 공고 내 명시된 지원자격 조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**
 - ※ 협약기간 내 관외 지역으로 이전 혹은 진흥원 입주기업 대상 사업의 경우, 입주시설 외로 이전할 경우 지원 취소
- 제출된 서류의 내용인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
- **최종선정 기업은 홈쇼핑 방송 전 기업부담금(3백만원) 선입금 必**(기한 내 입금 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)

[참고]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

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

| 구 분 | 제재 및 환수 사유 | 제재 및 환수기준 | |
|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| | 참여제한 | 지원금 환수 |
| 부정 수급 |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정한 방법(타기관 중복수혜 등)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| 3년 | 전액 환수 |
| 중단 · 실패 | <input type="checkbox"/>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, 실패한 경우 | 3년 | 전액 환수 |
| | <input type="checkbox"/> 지원기업 부도, 폐업, 대표자 사망 등 중단,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 기업에 없을 경우 | 면제 | 집행잔액 환수 |
| | <input type="checkbox"/>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| 2년 | 전액 환수 |
| 포기 | <input type="checkbox"/> 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○ 관련 증빙 제출 필요 | 면제 | 전액 환수 |
| |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정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| 경고 | 전액 환수 |
| 사업비 집행 | <input type="checkbox"/> 협약기간 내 단순 착오,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○ 협약기간 내 사용금액 복원 | 주의 | 해당없음 |
| | ○ 협약기간 내 사용금액 미복원 | 경고 | 해당금액 환수 |
| | <input type="checkbox"/> 협약기간 종료이후 사업비 집행한 경우 | 경고 | 해당금액 환수 |
| 협약 위배 |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 결과물 및 지출증빙자료 등을 허위로 제출·보고한 경우 | 3년 | 전액 환수 |
| | <input type="checkbox"/> 협약서상 의무사항 이행 및 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이행명령에 불응한 경우 | 2년 | 해당금액 환수 |
| | <input type="checkbox"/> 정당한 사유 없이 진흥원의 점검요구, 보고서 제출 등을 지체 또는 불응한 경우 | 경고 | 해당 없음 |
| | <input type="checkbox"/> 진흥원 승인(통보) 없이 무단으로 사업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○ 중간점검, 완료평가 결과(물)에 따라 필요시 해당 금액 환수 | 경고 | 해당없음 (필요시환수) |

- *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- *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
- * 연간 경고 2회 = 참여제한 1년, * 연간 주의 2회 = 경고 1회
 - ※ 경고 및 주의는 제재조치 통보일로부터 1년간 적용함
- * 참여제한 시작일은 진흥원의 제재조치 통보일로 함
- * 참여제한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 적용함
- * 지원금 횡령, 편취, 유용한 경우, 「공공재정환수법」의 방법과 절차를 준용
- * 제재 및 환수 사유가 확인된 시점에 2가지 이상 적용되는 경우, 더 높은 수위의 제재 및 환수 기준을 적용

7

제출서류

| No | 구비서류 | 구분 | 부수 | 비고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|---|
| 1 | 사업계획서 및 제품설명서 | - | 1부 | -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|
| 2 | 사업자등록증 | 사본 | 1부 | -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함 |
| 3 | 2024년 재무제표 | 사본 | 각 1부 | -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※ 법인사업자도 2024년 재무제표 발급전일 경우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|
| 4 | 지방세 및 국세 납입증명서 | 사본 | 각 1부 | -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함 |
| 5 |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| 사본 | 각 1부 | ※ 제공서식 활용 (대표자 및 담당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) |
| 6 | 확약서 | 사본 | 1부 | ※ 제공서식 활용 (대표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) |
| 7 | 1차 심사 가점 서류 | 사본 | 각 1부 | - 인증서, 여성기업, 우수기업, 입주기업 등 |
| 8 | 해당시 제품 품질 인증 관련 서류 | 사본 | 각 1부 | - HACCP, KC 인증 등의 제품 품질 인증 서류 |

※ 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제출(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, 확약서는 직인 날인 必)

※ 선택서류는 각 서류의 배점내역을 확인하여 해당 시 제출

[참고] 제출서류 발급처

| 구분 | 서류명 | 발급처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작성 서류 | ○ 사업계획서 및 제품설명서 | 진흥원 양식 |
| | ○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 | |
| | ○ 확약서 | |
| 사업자 확인 | ○ 사업자등록증 ※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|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|
| 매출액 확인 | ○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| 세무서 방문, 국세청 홈택스, 정부24 |
| | ○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(손익계산서 必) | 국세청 홈택스 |
| 세금납부 확인 | ○ 국세 납입 증명서 | 국세청 홈택스 |
| | ○ 지방세 납입증명서 | 시·구청 또는 읍·면·동사무소, 정부24 홈페이지(www.gov.kr) |

별첨 1. 중소기업 범위(중소기업기본법)

2. 진흥원 지원사업 목록

중소기업기본법

[시행 2024. 8. 28.] [법률 제19992호, 2024. 2. 27., 일부개정]

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(이하 “중소기업시책”이라 한다)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(이하 “중소기업”이라 한다)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. 다만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·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
 - 가.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 - 나.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 2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
 3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, 이종(異種)협동조합연합회(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 4.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조합, 연합회,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 5.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, 사업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-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(小企業)과 중기업(中企業)으로 구분한다.
-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. 다만,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4. 2. 20.>
-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·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0. 20.>

별첨2

진흥원 지원사업 목록

| NO | 지원분야 | 사업명 | 담당부서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1 | 기술지원 |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(R&D) | 미래산업팀 |
| 2 | | 대기업-중소기업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| |
| 3 | 마케팅·판로지원 | 맞춤형 온라인 판로지원 | 기업육성팀 |
| 4 | | 용인 기업 기획전 입점 지원 | |
| 5 | | TV 홈쇼핑 입점 지원 | |
| 6 | | 공공판로 입점 컨설팅 | |
| 7 | | 공공조달 등록 지원 | |
| 8 | | 마케팅 지원 | |
| 9 | |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온/오프 마케팅 지원 | |
| 10 | 용인시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| | |
| 11 | 해외진출 종합지원(해외지사화 지원) | 수출지원팀 | |
| 12 | 맞춤형 해외시장 개척 지원(해외TV홈쇼핑 입점지원) | | |
| 13 | 맞춤형 해외시장 개척 지원(수출 대행 서비스 지원) | | |
| 14 | 사업화 지원 | 첨단기술 융복합 실증지원 | 미래산업팀 |
| 15 | | 인증·특허 지원 | 기업육성팀 |
| 16 | | ESG 경영 및 탄소중립 인증 지원 | |
| 17 | | 시제품 제작 지원 | |
| 18 | | 인공지능 활용 제품개발 지원 | 소공인육성팀 |
| 19 | |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운영(시제품 제작지원) | |
| 20 | |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운영(인증 지원) | |
| 21 | | ICT 디바이스 용인랩 운영(시제품 제작지원) | |
| 22 | |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시제품제작 지원 | |
| 23 | |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산업재산권 및 인증 지원 | 수출지원팀 |
| 24 | 해외진출 종합지원(해외물류비 지원) | | |
| 25 | 창업지원 | 창업지원센터 통합운영(사업화/마케팅 지원) | 창업지원팀 |
| 26 | | 맞춤형 창업지원(사업화/마케팅 지원) | |
| 27 | |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(선택형사업) | |

- 위 사업 목록 중 최대 5개 사업까지 지원가능(당해년도 기준)

※ 해당 사업목록은 신규사업 신설 및 기존사업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- 2천만 원 이상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, 2천만 원 이상 사업에 추가 지원 불가(빨간색표기)

ex) A사업 선정(지원금 2천만원) → B사업(지원금 3천만원) 신청 불가, C사업(지원금 5백만원) 신청 가능

- 당해연도 기준 동일사업에 2회 이상 수혜 불가(동일사업은 1회만 수혜가능)

ex) 상반기 A사업 선정 → 하반기 A사업 신청 불가